|  |  |  |
| --- | --- | --- |
| **사회조직 평가 관리방법**  민정부 령 제39호  《사회조직 평가 관리방법》을 2010년 12월 20일 민정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이입국  2010년 12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조직 평가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사회조직이라 함은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등록한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 비 기업단위를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사회조직 평가라 함은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사회조직에 대한 법적 관리책임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기구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회조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과 결론을 내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사회조직 평가활동에서는 급에 따른 관리, 유별평가 및 객관, 공정 원칙에 준하고 정부의 지도, 사회의 참여 및 독자적 활동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는 등록관리권한에 따라 본급 사회조직 평가활동을 책임지고 하급 민정부서의 사회조직 평가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제2장 평가 대상과 내용**  **제6조** 평가를 신청하는 사회조직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사회단체, 파운데이션 또는 민영 비 기업단위 등록증을 취득해서 만 2년이 되고 사회조직 평가활동에 참가한 일이 없어야 한다.  (2) 평가등급을 취득해서 5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제7조** 평가기구는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의 평가를 거부한다.  (1) 그 전연도 연차검사에 불참한 상황  (2) 그 전연도 연차검사에 불합격이거나 연속 2년간 기본상 합격인 상황  (3) 그 전 연도에 관련 정부부서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행정처벌 집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  (4) 현제 관련 정부부서나 사법기관에서 입건조사 중인 상황  (5) 평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  **제8조** 사회조직의 평가는 그 유형에 따라 분류평가를 실시한다.  사회단체나 파운데이션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내용에는 기본조건, 내부관리, 업무실적 및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다. 민영 비 기업단위는 규범화 건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내용에는 기본조건, 내부관리, 업무활동과 신용,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다.  **제3장 평가기구와 직책**  **제9조**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는 사회조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와 사회조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함)를 설립하고 본급 평가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대한 조율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10조** 평가위원회는 사회조직 평가활동을 책임지고 평가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평가 전문가팀을 조직하여 평가활동을 알선하고 평가등급과 결론을 내오는 동시에 그 결과를 공시한다.  재심위원회는 사회조직 평가에 대한 재심과 고발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평가위원회는 7명 내지 25명으로 구성하고 주임 1명과 부주임 약간 명을 둔다. 재심위원회는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고 주임 1명과 부주임 1명을 둔다.  평가위원회 위원과 재심위원회 위원은 관련 정부부서, 연구기구, 사회단체, 회계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추천하고 민정부서에서 초빙한다.  평가위원회 위원과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제12조** 평가위원회 위원과 재심위원회 위원은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조직 관리와 간련한 법률, 법규 및 방침정책을 숙지하고  (2) 종사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고 보다 높은 명성이 있으며  (3) 원칙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청렴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제13조**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회의에는 2/3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최종평가는 기명투표방식으로 의결하고 평가결론은 위원 과반수로 통과한다.  **제14조** 평가위원회에는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사회기구에 위탁하여(이하 평가사무실이라 함) 평가위원회의 일상 활동을 책임지게 한다.  **제15조** 평가 전문가팀은 사회조직에 대한 시찰을 책임지고 초보 평가의견을 제출한다.  평가 전문가팀은 관련 정부부서, 연구기구, 사회조직, 회계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등 관련 전문인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평가 절차와 방법**  **제16조** 사회조직 평가활동은 하기 절차로 진행한다.  (1) 평가통지를 내거나 공시한다.  (2) 사회조직의 평가 참가자격을 심사 확인한다.  (3) 현지시찰을 하고 초보 평가의견을 제출한다.  (4) 초보 평가의견을 심사하고 평가등급을 확정한다.  (5)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통지서를 사회조직에 송달한다.  (6) 재심신청과 고발을 접수한다.  (7) 민정부서에서 사회조직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공고하는 동시에 3A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에 증서와 액자를 발급한다.  **제1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는 4A급 이상으로 평가된 사회조직을 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는 매년 12월 31일 전으로 본 행정구역의 사회조직 등급평가 상황과 5A급으로 평가된 사회조직 명부를 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평가기간에 평가기구와 평가 전문가는 평가에 참가한 사회조직에 필요한 서류와 증명자료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평가에 참가한 사회조직은 이에 협력하여 진실한 상황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장 기피와 재심**  **제19조** 평가위원회와 재심위원회, 전문가에게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피해야 한다.  (1) 평가대상 사회조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2) 일찍 평가대상 사회조직에서 임직하였고 이직한지 만 2년이 안 되는 상황  (3) 평가대상 사회조직과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기다관계가 있는 상황.  평가대상 사회조직에서 평가사무실에 기피문제를 제의하는 경우 평가사무실에서 즉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 평가대상 사회조직에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기간 내에 평가사무실에 서면 재심신청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사무실에서 사회조직의 재심신청과 원시자료를 심사하여 확인한 후 재심위원회에 보고하여 재심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제22조** 재심위원회에서는 평가전문가대표의 초보평가 상황소개와 재심신청 사회조직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재심서류를 확인한 후 기명투표로 의결해야 하며 재심결과는 위원 전원의 과반수로 통과해야 한다.  **제23조**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은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재심신청 사회조직에 서면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제24조** 평가사무실에서는 고발을 접수한 후 진지하게 확인하고 상황이 사실인 경우 처리의견을 내온 다음 재심위원회의 재정에 회부해야 한다. 재정결과는 즉시 고발인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관련 사회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제25조** 평가위원회 위원, 재심위원회 위원 및 평가전문가는 실사구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평가등급 관리**  **제26조** 사회조직 평과결과는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높은 등급으로부터 5A급(AAAAA), 4A급(AAAA), 3A급(AAA), 2A급(AA), 1A급(A)순으로 한다.  **제27조**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은 대외활동이나 홍보 시에 평가등급증서를 신용증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평가등급 액자는 서비스장소나 사무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걸고 의식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제28조** 사회조직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3A급 이상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은 우선 정부기능 이전을 접수하고 우선 정부조달 서비스를 접수하고 우선 정부의 포상을 받을 수 있다.  3A급 이상 평가등급을 취득한 파운데이션이나 자선조직 등 공익성 사회조직은 규정에 따라 공익성 증여의 납세 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4A급 이상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은 연차검사 시에 연차검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29조** 사회조직은 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 2년 전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급평가에 참가할 조건이 되는 사회조직이 등급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 후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등급 사회조직으로 간주한다.  **제30조**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하향조절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취소한다.  (1) 평가 시에 허위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평가담당자와 내통한 부정행위로 평가사실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2) 평가등급증서를 개찬, 위조, 대출, 대차하였거나 평가등급 액자를 위조, 대출, 대차한 상황  (3) 연속 2년간 연차검사에 기본합격인 상황  (4) 그 전연도 연차검사에 불합격이거나 그 전연도 연차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상황  (5) 관련 정부부서로부터 경고, 벌금, 불법소득 몰수, 기한부 활동중지 등 행정처벌을 받은 상황  (6)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타상황.  **제31조** 평가등급을 하향조정 당한 사회조직은 2년 내에 평가신청을 하지 못하며 평가등급을 취소당한 사회조직은 3년 내에 평가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32조** 민정부서에서는 평가등급 하향조절 결정이나 취소결정을 서면으로 대상 사회조직 및 그 업무주관단위, 정부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33조** 평가등급을 취소당한 사회조직은 통지 입수일로부터 15일내에 원 평가등급증서와 액자를 민정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평가등급이 하향 조절된 사회조직은 통지 입수일로부터 15일내에 평가등급증서와 액자를 민정부서에 반납하고 해당 평가등급증서와 액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정부서에서 공시하여 폐기해야 한다.  **제34조** 평가위원회 위원, 재심위원회 위원, 평가전문가가 평가활동에서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조작하고 사리를 위해 부정을 한 경우 그 위원자격과 전문가자격을 취소한다.  **제7장 부 칙**  **제35조** 사회조직 평가경비는 민정부서의 사회조직 관리경비에서 지출하고 평가대상으로부터 평가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사회조직 평가기준과 내용, 평가등급증서와 액자의 양식은 민정부서에서 통일로 제정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社会组织评估管理办法**  民政部令第39号  《社会组织评估管理办法》已经2010年12月20日民政部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3月1日起施行。    部长：李立国  　　 2010年12月27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社会组织评估工作，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社会组织是指经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登记注册的社会团体、基金会、民办非企业单位。  **第三条** 本办法所称社会组织评估，是指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为依法实施社会组织监督管理职责，促进社会组织健康发展，依照规范的方法和程序，由评估机构根据评估标准，对社会组织进行客观、全面的评估，并作出评估等级结论。  **第四条** 社会组织评估工作应当坚持分级管理、分类评定、客观公正的原则，实行政府指导、社会参与、独立运作的工作机制。  **第五条** 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按照登记管理权限，负责本级社会组织评估工作的领导，并对下一级人民政府民政部门社会组织评估工作进行指导。  **第二章 评估对象和内容**  **第六条** 申请参加评估的社会组织应当符合下列条件之一：  　　（一）取得社会团体、基金会或者民办非企业单位登记证书满两个年度，未参加过社会组织评估的；  　　（二）获得的评估等级满5年有效期的。  **第七条** 社会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评估机构不予评估：  　　（一）未参加上年度年度检查；  　　（二）上年度年度检查不合格或者连续2年基本合格；  　　（三）上年度受到有关政府部门行政处罚或者行政处罚尚未执行完毕；  　　（四）正在被有关政府部门或者司法机关立案调查；  　　（五）其他不符合评估条件的。  **第八条** 对社会组织评估，按照组织类型的不同，实行分类评估。  　　社会团体、基金会实行综合评估，评估内容包括基础条件、内部治理、工作绩效和社会评价。民办非企业单位实行规范化建设评估，评估内容包括基础条件、内部治理、业务活动和诚信建设、社会评价。  **第三章 评估机构和职责**  **第九条** 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设立相应的社会组织评估委员会（以下简称评估委员会）和社会组织评估复核委员会（以下简称复核委员会），并负责对本级评估委员会和复核委员会的组织协调和监督管理。  **第十条** 评估委员会负责社会组织评估工作，负责制定评估实施方案、组建评估专家组、组织实施评估工作、作出评估等级结论并公示结果。  　　复核委员会负责社会组织评估的复核和对举报的裁定工作。  **第十一条** 评估委员会由7至25名委员组成，设主任1名、副主任若干名。复核委员会由5至9名委员组成，设主任1名、副主任1名。  　　评估委员会和复核委员会委员由有关政府部门、研究机构、社会组织、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单位推荐，民政部门聘任。  　　评估委员会和复核委员会委员聘任期5年。  **第十二条** 评估委员会和复核委员会委员应当具备下列条件：  　　（一）熟悉社会组织管理工作的法律法规和方针政策；  　　（二）在所从事的领域具有突出业绩和较高声誉；  　　（三）坚持原则，公正廉洁，忠于职守。  **第十三条** 评估委员会召开最终评估会议须有2/3以上委员出席。最终评估采取记名投票方式表决，评估结论须经全体委员半数以上通过。  **第十四条** 评估委员会可以下设办公室或者委托社会机构（以下简称评估办公室），负责评估委员会的日常工作。  **第十五条** 评估专家组负责对社会组织进行实地考察，并提出初步评估意见。  　　评估专家组由有关政府部门、研究机构、社会组织、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等有关专业人员组成。  **第四章 评估程序和方法**  **第十六条** 社会组织评估工作依照下列程序进行：  　　（一）发布评估通知或者公告；  　　（二）审核社会组织参加评估资格；  　　（三）组织实地考察和提出初步评估意见；  　　（四）审核初步评估意见并确定评估等级；  　　（五）公示评估结果并向社会组织送达通知书；  　　（六）受理复核申请和举报；  　　（七）民政部门确认社会组织评估等级、发布公告，并向获得3A以上评估等级的社会组织颁发证书和牌匾。  **第十七条** 地方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将获得4A以上评估等级的社会组织报上一级民政部门审核备案。省级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在每年12月31日前，将本行政区域社会组织等级评估情况以及获得5A评估等级的社会组织名单上报民政部。  **第十八条** 评估期间，评估机构和评估专家有权要求参加评估的社会组织提供必要的文件和证明材料。参加评估的社会组织应当予以配合，如实提供有关情况和资料。  **第五章 回避与复核**  **第十九条** 评估委员会委员、复核委员会委员和评估专家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  　　（一）与参加评估的社会组织有利害关系的；  　　（二）曾在参加评估的社会组织任职，离职不满2年的；  　　（三）与参加评估的社会组织有其他可能影响评估结果公正关系的。  　　参加评估的社会组织向评估办公室提出回避申请，评估办公室应当及时作出是否回避的决定。  **第二十条** 参加评估的社会组织对评估结果有异议的，可以在公示期内向评估办公室提出书面复核申请。  **第二十一条** 评估办公室对社会组织的复核申请和原始证明材料审核认定后，报复核委员会进行复核。  **第二十二条** 复核委员会应当充分听取评估专家代表的初步评估情况介绍和申请复核社会组织的陈述，确认复核材料，并以记名投票方式表决，复核结果须经全体委员半数以上通过。  **第二十三条** 复核委员会的复核决定，应当于作出决定之日起15日内，以书面形式通知申请复核的社会组织。  **第二十四条** 评估办公室受理举报后，应当认真核实，对情况属实的作出处理意见，报复核委员会裁定。裁定结果应当及时告知举报人，并通知有关社会组织。  **第二十五条** 评估委员会委员、复核委员会委员和评估专家应当实事求是、客观公正，遵守评估工作纪律。  **第六章 评估等级管理**  **第二十六条** 社会组织评估结果分为5个等级，由高至低依次为5A级（AAAAA）、4A级(AAAA)、3A级(AAA)、2A级(AA)、1A级(A)。  **第二十七条** 获得评估等级的社会组织在开展对外活动和宣传时，可以将评估等级证书作为信誉证明出示。评估等级牌匾应当悬挂在服务场所或者办公场所的明显位置，自觉接受社会监督。  **第二十八条** 社会组织评估等级有效期为5年。  　　获得3A以上评估等级的社会组织，可以优先接受政府职能转移，可以优先获得政府购买服务，可以优先获得政府奖励。  　　获得3A以上评估等级的基金会、慈善组织等公益性社会团体可以按照规定申请公益性捐赠税前扣除资格。  　　获得4A以上评估等级的社会组织在年度检查时，可以简化年度检查程序。  **第二十九条** 评估等级有效期满前2年，社会组织可以申请重新评估。  　　符合参加评估条件未申请参加评估或者评估等级有效期满后未再申请参加评估的社会组织，视为无评估等级。  **第三十条** 获得评估等级的社会组织有下列情形之一的，由民政部门作出降低评估等级的处理，情节严重的，作出取消评估等级的处理：  　　（一）评估中提供虚假情况和资料，或者与评估人员串通作弊，致使评估情况失实的；  　　（二）涂改、伪造、出租、出借评估等级证书，或者伪造、出租、出借评估等级牌匾的；  　　（三）连续2年年度检查基本合格的；  　　（四）上年度年度检查不合格或者上年度未参加年度检查的；  　　（五）受相关政府部门警告、罚款、没收非法所得、限期停止活动等行政处罚的；  　　（六）其他违反法律法规规定情形的。  **第三十一条** 被降低评估等级的社会组织在2年内不得提出评估申请，被取消评估等级的社会组织在3年内不得提出评估申请。  **第三十二条** 民政部门应当以书面形式将降低或者取消评估等级的决定，通知被处理的社会组织及其业务主管单位和政府相关部门，并向社会公告。  **第三十三条** 被取消评估等级的社会组织须在收到通知书之日起15日内将原评估等级证书、牌匾退回民政部门；被降低评估等级的社会组织须在收到通知书之日起15日内将评估等级证书、牌匾退回民政部门，换发相应的评估等级证书、牌匾。拒不退回（换）的，由民政部门公告作废。  **第三十四条** 评估委员会委员、复核委员会委员和评估专家在评估工作中未履行职责或者弄虚作假、徇私舞弊的，取消其委员或者专家资格。  **第七章 附 则**  **第三十五条** 社会组织评估经费从民政部门社会组织管理工作经费中列支。不得向评估对象收取评估费用。  **第三十六条** 社会组织评估标准和内容、评估等级证书牌匾式样由民政部统一制定。  **第三十七条** 本办法自2011年3月1日起施行。 |